

한살림전북 제 11차 이사회 의사록

1. 소집통지일 : 2017년 11월 13일(월)
2. 일시 : 2017년 11월 21일(화) 10시 30분
 - (1) 개회시간 : 오전 10시 37분
 - (2) 폐회시간 : 오후 4시 20분
3. 장소 : 한살림전북 회의실
4. 참석이사
 - (1) 참석 : 박영신, 박지현, 최진희, 곽은경, 임미란, 김영임, 조도운, 라영신, 문선희
 - (2) 불참 : 양은정, 조윤정, 구장희
5. 참관 : 김수미(감사), 임춘성, 박은희(기록), 정택균

■ 정족수 확인 및 개회 선언

- 박영신 이사장이 재적이사 12인 중 9인 참석(박영신, 박지현, 최진희, 곽은경, 임미란, 김영임, 조도운, 라영신, 문선희)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10시 37분, 2017년 11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 라영신 이사가 오후 12시 40분에 퇴장하다.
- 최진희 이사가 오후 3시에 퇴장하다.
- 임미란 이사가 오후 3시에 퇴장하다.
- 최진희 이사가 오후 3시 10분에 재입장하다.

■ 묵상 / 인사나눔

■ 전차회의 결과보고

- 임춘성 사무국장이 전차 회의결과를 낭독하다.
- 박영신 이사장이 전차 회의록의 승인 여부를 묻고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다.

■ 사업보고

- 임춘성 사무국장이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보고를 하다.
- 임미란 이사가 전북 차원의 연대활동을 활발히 펼쳐주기를 요청하다.
- 임미란 이사가 위원회 회의비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묻다.
- 임춘성 사무국장이 위원회 회의비는 확인하겠다고 답하다.
- 조도운 이사가 2월에 조합원이 두드러지게 많이 탈퇴한 이유를 묻다.
- 임춘성 사무국장이 2월에 출자금 안내 등이 나가면서 가입한지도 모르고 이용하지도 않던 조합원들이 탈퇴한다고 답하다.

- 조도운 이사가 매장별 수지분석을 통해, 특히 익산매장과 군산매장의 공급고 상승의 장기적인 계획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 묻다.
- 임춘성 사무국장이 익산매장은 5년이 되고 군산매장은 4년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매장 수지 정상화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답하다. 익산매장과 군산매장은 더 길어지고 있고, 성장률도 6개 매장 중에서 가장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다.
- 조도운 이사가 어려운 사정인 건 알지만, 전북 생협 사무국과 군산과 익산 운영위원회 내지는 활동가 그룹과 함께 원인 분석을 하고 이후에 조합원 증가와 이용률 증가가 이루어지면 한다고 말하다. 결과물들이 작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으로 올라와야 한다고 말하다.
- 박지현 이사가 운영위에서도 결과를 가져오고 총준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다.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한 케이스의 매장에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다.
- 임미란 이사가 매장책임활동가 회의에서 수지분석을 하고 개선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다.

■ 부서별 보고 및 활동 보고

1. 매장

(1) 정읍매장 유통기한 경과물품 판매(호박즙)

- 임춘성 사무국장이 자료를 참고하여 보고하다.
- 임미란 이사가 매장 재고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묻다.
- 임춘성 사무국장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진다고 답하다.
- 문선희 이사가 소비가 많지 않은 물품은 이미 유통기한이 절반이 지난 물품이 들어오기도 한다면, 매장에서 체크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하다.
- 임춘성 사무국장이 타 지역 사례를 확인했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고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다.
- 문선희 이사가 매뉴얼로 체크를 해야 한다고 말하다.
- 박지현 이사가 구체적인 방안을 매장에서 내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다.
- 김영임 이사가 재고와 실제 물품이 맞지 않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다.
- 임미란 이사가 파손율 집계를 언제 내는지 묻고, 파손율도 보고자료에 올려달라고 말하다.
- 조도운 이사가 이번에는 소비자분이 이해를 해서 괜찮았지만, 파파라치나 소비자가 인정하지 않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책임활동가들과 준비를 해서 유통기한과 관련한 재고조사의 방법이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말하다.
- 임춘성 사무국장이 현재 재고조사는 매장 문을 닫고 4시간씩 하고 있다며, 부서간 전체회의에서 확인한 바로는 매장책임활동가들은 그날그날 확인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말하다.
- 문선희 이사가 유통기한이 긴 물품들의 재고 파악이 어렵다면, 매뉴얼이 없으면 체크가 어렵다고 말하다.
- 조도운 이사가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매장 책임활동가들의 자각이 필요하며,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활동가 책임이나 물품을 판매한 매장활동가의 책임이나, 책임의 정도가 어떻게 다르냐는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다고 말하다. 책임할

동가와 매장활동가의 역할 부분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 임미란 이사가 유통기한이 위반되었을 때 문제가 커진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 김영임 이사가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묻다.
- 임춘성 사무국장이 부서별 전체회의에서 공유했고, 매장활동가에게 경위서를 받았다고 답하다.
- 김영임 이사가 경위서가 갖는 영향력은 어떤 것인지 묻다.
- 임춘성 사무국장이 경위서를 받아서 정확한 상황파악을 할 수 있다며, 징계 등의 조치는 인사위원회에서 파악할 문제라고 말한다.
- 김영임 이사가 조합원에게 이 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겠다거나 하는 단단한 장치를 한 것인지 묻다.
- 임춘성 사무국장이 그렇게는 하지 못했다고, 그 조합원이 이해를 해주었다고 답하다.
- 조도운 이사가 체크리스트 같은 매뉴얼을 챙기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 김영임 이사가 구속력 있는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살림 물품이 생산일자 기준이라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불편해서 연합에 통일성 있는 유통기한 표기를 제안했고, 전국적으로 차츰 개선해 가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한다.

(2) 한살림가공생산자협의회 LED 모니터 지원

- 임춘성 사무국장이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하다.

2. 회계

- 임춘성 사무국장이 자료에 의거하여 매출액과 당기 순이익을 보고하다.

3. 개별공급

- 임춘성 사무국장이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하다.

4. 지역물류

- 임춘성 사무국장이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하다.

5. 분과위원회 보고

- 임미란 농산물위원장이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하다.
- 김영임 가공품위원장이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하다.

6. 지부/운영위원회 보고

- 라영신 이사가 정읍운영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기타 안건으로 논의되다.
- 박지현 전주지부장이 자료를 참고하여 10월 전주지부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하다.
- 오후 1시에 정회 후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다.
- 곽은경 익산운영위원장이 자료를 참고하여 10월 익산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하다.

7. 마을모임/소모임 보고

- 마을모임/소모임 보고는 지면으로 대체하다.

8. 도농교류

- 박은희 활동실장이 자료를 참고하여 보고하다.
- 9. 생활학교 계획(안)
 - 박은희 활동실장이 자료를 참고하여 보고하다.
- 10. 입사·퇴사 및 업무분장
- 11. 연수 및 교육
 - 임춘성 사무국장이 자료를 참고하여 보고하다.
- 12. 부서간 전체회의(11월)
 - 임춘성 사무국장이 자료를 참고하여 보고하다.
- 13. 연대활동
- 14. 연합이사회 [심의안건] 보고
 - 박영신 이사장이 연합이사회 내용을 공유하다.
- 15. 생협사업 추진회의
 - 임춘성 사무국장이 자료를 참고하여 보고하다.
- 16. 햇빛발전협동조합 출자조합원 모집
 - 임춘성 사무국장이 자료를 참고하여 보고하다.
- 17. 활동일지
 - 임춘성 사무국장이 자료를 참고하여 보고하다.
- 18. 전주지부 신규매장 개설을 위한 출자증액운동
 - 임춘성 사무국장이 전주지부운영위원회와 조합원들이 출자증액운동을 원한다는 배경을 설명하다.
 - 김영임 이사가 총회에서는 신규 매장이 승인이 난 것이 아니냐고 묻다.
 - 임춘성 사무국장이 자본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정읍매장 이전 건과 신규매장 개장 건, 두 가지라고 답하다.
 - 임미란 이사가 신규매장 개장 건이 전주로 확정된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묻다.
 - 박지현 이사가 전주만 신규매장을 요구했다고 말한다. 3천만원으로는 부족하고 1억은 출자를 해야 가능하다고 말한다.
 - 임미란 이사가 이런 건은 조직의 계획 속에서 해야 할 문제지 전주 신규매장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처럼, 이런 보고는 순서가 맞지 않다고 말한다.
 - 박지현 이사가 이미 전 이사회와 총준위에서 계속 이야기 된 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미 전주 효자·삼천지구 조합원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전주 매장활동가들의 신규매장에 대한 요구가 있는 배경이 있다고 말한다. 전체 전북의 살림을 이끌어가고 있는 전주의 입장에서 보자면 전주가 더 성장하고 가야 임금 상승 부분이라든가 직원들의 요구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임미란 이사가 지부운영위원회에서 나온 것으로 하시지 왜 보고사항으로 올렸는지 묻다.
 - 박지현 이사가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운영위원회만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올린 것이라고 말한다.
 - 조도운 이사가 정읍매장이 보류가 된 것이고, 전주 신규매장을 추진해보겠다는 것인데, 총회

에서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읍매장과 함께 얘기를 해야 하고, 신규 매장 개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석해야 한다며, 매장수지 분석을 하고 매장 임대료와 초기 비용까지 고려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양쪽 다 사무국에서 얘기해서 안건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조합원 출자증액운동은 전북 차원에서 펼쳐야 하는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출자증액운동은 긍정적이라며, 사무국에서는 사업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고 총준위를 거쳐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한다.

- 임미란 이사가 정읍매장 이전 건은 보류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묻다.
- 임춘성 사무국장이 결론적으로는 보류가 되었다며, 이유는 자본 부족과 이전 장소 문제였다고 말한다.
- 임미란 이사가 정읍매장 이건 건을 뒤로 미루고 전주에 신규 매장을 내겠다는 논의에 힘을 주는 것인지 묻다.
- 임춘성 사무국장이 그 결정을 이사회에서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 임미란 이사가 출자증액이 되면 조직에서 그 쪽에 매장을 내주는 것으로 가는 것인지 묻다.
- 문선희 이사가 올 상반기 이사회에서 정읍매장 이전 건에 관련한 논의를 했고 보류 결론을 낸 것이라고 말한다. 정읍매장 이전의 목적이 공급액 증가에 있었고, 뚜렷한 공급액 활성화 방안도 없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말한다.
- 임미란 이사가 전북 한살림이 매장 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이익이 많이 남는 곳에만 매장을 내겠다 하신다면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익산이고 군산이고 다 폐쇄해야 한다고 말한다. 100여명 조합원이 있는 고창, 김제 등에도 작게라도 매장을 내겠다는 생각을 안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한다. 전 국토가 대도시 중심으로 가듯이 전주 중심으로 모든 것이 가는게 맞지 않다고 말한다. 이사회 결정은 무게감 있게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 문선희 이사가 정읍매장 이전 보류는 상반기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한다.
- 임미란 이사가 이미 그에 앞서 작년 9월인가 10월 이사회에서 정읍매장 확장이전 건은 결정한 것이라고 말한다.
- 문선희 이사가 그런 전제에서 상반기에 다시 이사회에서 논의되었고 보류된 것이라고 말한다.
- 박지현 이사가 전주 서신매장의 경우 정읍매장보다 훨씬 열악하다며 정읍매장만 확장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 조도운 이사가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었고, 정읍매장과 신규매장이 총회에서 결과가 난 것이라고 말한다.
- 박지현 이사가 그때만 해도 지금과 상황이 달랐다고 말한다. 그때는 사업이익이 나고 전북이 성장세에 있다고 보고가 되어서 사업성이 크게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 났다고 말한다. 지금은 인건비 상승과 저성장세이므로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그때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받아 가야한다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말한다.
- 조도운 이사가 대의원 총회 때 통과된 사항 중 정읍매장 확장은 보류되었고, 전주매장은 신규매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서로가 합의를 하는 과정을 총회 준비에서 하자고

말하다.

- 임미란 이사가 두 개를 다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되는데, 정읍매장이 마무리가 안됐는데 전주매장 신규매장 건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일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하다.
- 박지현 이사가 반드시 하나를 마무리하고 다른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신규매장 개장 건을 다음 달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하다.
- 조도운 이사가 출자증액운동의 목적이나 절차가 중요하다고 말하다.
- 박지현 이사가 전주지부에서 출자증액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하다.
- 임미란 이사가 그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며, 다만 신규매장 개장을 목적으로 얘기하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하다.
- 박지현 이사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하다.
- 임미란 이사가 정읍매장 건은 보류인데 어떻게 되는지 묻다.
- 임춘성 사무국장이 신규매장 개장 건과 정읍매장 확장 이전 건 두 가지를 타이틀로 걸고 출자증액을 하는 방안을 제안하다. 또 하나는 총회 이후에 출자증액운동을 하는 방안을 제안하다.
- 박지현 이사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출자증액운동을 하자는 것인데, 타 지역에서 전주 매장에 관심을 가질 것 같지 않고, 정읍 매장 확장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출자금 증액운동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다.
- 김영임 이사가 출자증액운동은 전주지부에서 전주지부의 창립목표와 함께 자발적으로 건의한 것인데, 의지를 꺾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다. 정읍에서는 따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하다.
- 박지현 이사가 전북 전체의 살림이 어려우니 사업성이 있는 곳에 투입해서 같이 잘 살자는 것인데 막아서는 것은 힘든 면이 있다고 말하다.
- 조도운 이사가 자료가 필요하다며 사업성에 관련하여 비용과 공급액 관련하여 정읍, 전주 양쪽의 계획을 사무국에서 데이터로 올려달라고 말하다.
- 박지현 이사가 출자증액운동이 조직에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신규매장을 당장 내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가로 막는 것은 이사회에서 삼가야 한다고 말하다. 정읍, 군산, 익산, 전주 전 지역이 출자증액운동을 함께 펼칠 것을 제안한다고 말하다. 부여 같은 경우는 계속 상시적으로 출자증액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다.
- 문선희 이사가 전주지부에서 출자증액을 해서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다.
- 박지현 이사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하다.
- 조도운 이사가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다.
- 문선희 이사가 전주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이사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하다.
- 조도운 이사가 그 방식을 공식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모임이나 그런데서 하겠다는 것인지 묻다. 이사회에서 합의절차를 거쳐서 공식화되어야 한다고 말하다.
- 박지현 이사가 대의원 총회에서 통과가 된 것을 다시 얘기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하다. 전주가 출자증액운동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했는데 왜 이사회에서 막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다고 말한다.

- 조도운 이사가 한살림전북의 실무라인이나 전북의 예산의 내용일 경우에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 박지현 이사가 한살림전북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한다. 지금 활동을 막는 것이냐고 묻는다.
- 문선희 이사가 다음 달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제안한다.
- 김영임 이사가 지부운영위원들이 출자증액운동을 할 것이라고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 문선희 이사가 신규매장 개장의 절차도 필요하다며, 절차를 밟아서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다.
- 조도운 이사가 동의한다며,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사무국 차원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말한다. 절차와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신규매장 건이 질곡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한다.
- 김영임 이사가 절차라 함은 출자증액과 신규매장 위치까지 정해지는 것인지 묻는다.
- 조도운 이사가 조합원의 요구와 비용, 위치나 임대료 등의 예산상 자료 등이 이사회에 올라와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 박지현 이사가 출자증액운동을 한다는 것만 승인해달라고 말한다.
- 조도운 이사가 논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사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사무국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 문선희 이사가 이사회에서 자료를 보고 판단하자고 말한다.

<의결사항>

- 신규매장 개장 건을 다음 달 안건으로 상정한다.

■ 안건 토의

1. 안건 제 1호 : 실무자, 활동가 퇴직연금 가입(건)

- 임춘성 사무국장이 자료에 의거하여 퇴직연금 가입 건을 설명하다.

<제안 내용>

- 한살림전북 6개 매장(정읍, 평화, 서신, 익산, 군산, 송천) 활동가 퇴직연금 가입을 제안함.
- 본부소속 실무자, 활동가는 2018년 수지 및 자본예산에 따라 퇴직연금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함.

<논의경과>

- 박지현 이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왜 지금까지 퇴직연금 가입이 안 되었는지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다.

<의결사항>

- 제안된 내용대로 한살림전북 6개매장(정읍, 평화, 서신, 익산, 군산, 송천) 활동가 퇴직연금 가입을 승인하다.

2. 안건 제 2호 : 한살림 P2P 법인 설립 출자금 조성(안) 논의

- 임춘성 사무국장이 제안배경을 자료에 의거하여 설명하다.

<제안 내용>

- P2P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금으로 100~150만원 출자 승인 요청함

<논의경과>

- 김영임 이사가 100~150만원의 출자 승인에 동의하다.
- 박지현, 조도운, 최진희, 문선희, 곽은경 이사가 동의하다.

<의결사항>

- 한살림 P2P 법인 설립 출자금을 100~150만원 금액으로 출자하기로 결정한다.

3. 안건 제 3호 : 2018년 한살림전북 대의원 선출 기준(건)

- 임춘성 사무국장이 자료에 의거하여 대의원 선출 규약을 설명하다.

<논의경과>

- 임춘성 사무국장이 당연직 대의원의 법률 위반 근거를 자료에 의거하여 설명하다.
- 조도운 이사가 실무·활동 부문과 생산 부문으로 나누어서 선출하고, 생산자 대의원 수를 10명 정도로 정하는 것을 제안하다.
- 박지현 이사가 실무·활동가도 일반 조합원과 구분해서 부문별 대표로 선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다.
- 김영임 이사가 작년에 활동가 몇 명이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는지 묻다.
- 임춘성 사무국장이 전주/완주 약 9명, 정읍 4명이었다고 답하다.
- 임춘성 사무국장이 타 지역의 사례를 설명하다. 생산자를 일반 조합원으로 보고 묶어서 대의원으로 선출하는 경우가 있고, 생산자와 실무·활동 부문을 따로 선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다.
- 박지현 이사가 실무·활동 부문은 몇 명을 두는 게 좋은 지 사무국장에게 묻다.
- 임춘성 사무국장이 5명 정도를 제안하다.
- 박지현 이사가 대의원의 수를 총회 구성 최소 인원으로 결정하자며, 100가구 당 1인을 제안하다.
- 문선희, 조도운, 김영임, 최진희 이사가 동의하다.
- 박영신 이사장이 대의원 선출 기준에서 조합사업을 이용하는 횟수를 연 12회로 하자고 제안하다.

- 박지현, 문선희, 곽은경, 김영임, 최진희 이사가 동의하다.
- 조도운 이사가 대의원 선출 기준에 출자금을 기준으로 넣을 수 있는지 묻다.
- 문선희, 김영임 이사가 출자금을 기준으로 넣는 것에 반대하다.
- 조도운 이사가 활동참여 횟수는 1회 이상으로 하면 되는지 물으며, 매장 시식도 활동참여 횟수에 넣을 수 있는지 정해주자고 말하다.
- 박지현 이사가 대의원 수의 정원이 됐을 때는 그대로, 정원이 넘었을 때는 대의원 선출 모임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하자고 말하다. 활동참여는 조합원 활동으로 제한하자고 말하다.

<의결사항>

① 대의원 구성

- 2018년 한살림전북 대의원구성은 소비자부문, 생산자부문, 실무·활동가부문에 한다.
- 소비자 대의원은 100가구당 1인, 생산자 대의원 10인, 실무자·활동가 대의원 5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 대의원 선출은 정읍, 전주/완주, 익산, 군산, 고창, 김제, 부안, 남원, 진안/기타지역, 생산자, 실무자/활동가 로 나누어 선출한다.

② 대의원 요건

- 조합 가입 후 1년을 경과한 자, 다만 조합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합은 예외로 한다.
- 조합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자(연 12회 이상 이용)
- 조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조합원 활동참여 횟수 1회 이상)
 - ※ 입후보자가 부족한 선거구는 참여한 조합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 ※ 활동은 조합원 활동에 한한다.
- 대의원 선출 일정 및 진행은 사무국에 위임한다.

4. 기타 안건 : 정읍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건

- 라영신 이사가 정읍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이 10월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원활하게 구성되지 못했다고 말하다.

<논의경과>

- 임춘성 사무국장이 11월 정읍운영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설명하다.
- 라영신 이사가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한 모임지기를 배제한 것은 기존 운영위원회의 욕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다.
- 김영임 이사가 지난 이사회 결정사항은 방경은님을 운영위원장으로 인정하고 모임지기가 위원으로 다 포함되는 것이었다며, 이번 정읍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다. 이렇게 결정된 이유가 궁금하고, 표결한 위원들의 자격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하다.

- 임미란 이사가 10월 이사회에서 정읍의 방경은님을 위원장으로 결정할 때, 기존 위원들은 사퇴시키더라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달았냐고 묻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기존 위원들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 김영임 이사가 결정적으로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구를 작성했다며 기존 위원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지기우선이 아닌 기존 위원들이 계속 위원을 하겠다는 전제였다면 10월 이사회에서 1안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 문선희 이사가 10월 이사회에서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위원을 구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 김영임 이사가 이사회 회의결과는 지역이사 다음에 모임지기였다면서 회의결과가 뒤집혀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 문선희 이사가 기존 위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냐 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적극적으로 조합원 활동을 하고 있는 지기가 본인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한 점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한다.
- 김영임 이사가 매장책임활동가를 참관으로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하다.
- 문선희 이사가 군산운영위원회의 경우 이러한 논쟁이 없고 위원 숫자가 넘치지 않기 때문에 매장책임활동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10월 이사회 결정사항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위원이 된다는 것에 대한 합의하며 당연히 지기는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매장책임활동가가 참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 박지현 이사가 이사회 회의 내용을 전달하고 다시 합의하여 오는 것을 제안하다.
- 조도운 이사가 모임지기가 아닌 위원으로 결정된 분 중에 한 분은 매장활동가와 송사 문제로까지 갔었던 분이라며, 갈등이 있었던 분들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 임미란 이사가 그런 윤리적인 잣대를 대는 기준의 근거를 대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 박지현 이사가 조도운 이사님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한다. 이 모든 문제의 발생 원인이 이사회에서 전 정읍운영위원회를 정지시킨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정지의 원인 당사자인 전 정읍운영위원장이었던 분이(윤리적인 문제인지 법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또 다시 물의를 일으키며 지역운영위원회 위원 자리를 가지고 계시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고 말한다. 이사회 차원에서 권고해서라도 그 분은 위원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 라영신 이사가 지역운영위원회의 목적에 맞는 분이 운영위원이 되고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고 말한다.
- 김영임 이사가 2016년 조직활동분석표에 보면 정읍운영위원회에 조현미님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한다.
- 조도운 이사가 그 분은 기존 운영위원회 몫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실무·활동가 몫으로 결합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 박지현 이사가 현재 활동하는 지기들이 인원이 넘치고 있는데 실무자가 위원으로 같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한다. 전 정읍운영위원장과 매장책임활동가에게 위원을 하지 않기를 권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 조도운 이사가 이사회 10월 결정사항의 취지에 맞게 실제 조합원 활동을 하는 모임지기를 우선으로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말한다. 활동가는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조합원 활동이 목적인 운영위원회에는 참관 형태로 결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기존 위원들은 인정하고 위원이 되지 못한 소모임지기 한 분은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 임미란 이사가 급여를 받고 있는 활동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참관으로 권고를 하려면, 다른 지역에서도 빼야 한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 문선희 이사가 다른 지역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 김영임 이사가 이런 논란이 있을까봐 저번 이사회에서 문구를 정한 것이라고 말한다.
- 임춘성 사무국장이 이사회에서 결정할 때, 지역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실무자가 먼저였는데 이사회에서 모임지기를 앞으로 둔 결정을 했다고 말한다.
- 김영임 이사가 10월 이사회에 입장을 그대로 전한다면, 여기 두 분 이선희님과 조원향님이 빠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읍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니까 두 분을 인정하고 활동가를 참관으로 권고하고 꼬마농부지기인 이수진님을 위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사회에 결과를 따져보면 모임지기가 먼저지 전 위원들이 먼저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한다.
- 문선희 이사가 권고를 해도 책임활동가가 끝까지 양보를 못한다면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선희, 조원향, 조현미님이 논의해야 하지, 이수진님은 반드시 먼저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 임미란 이사가 정읍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 박지현 이사가 10월 이사회에 결정을 번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전 정읍운영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사회 차원에서 위원회에서 탈퇴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 조도운 이사가 10월 이사회 결정사항에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취지는 조합원 활동 활성화에 있으므로 모임지기는 위원에 포함시켜야 하고, 기존 위원과 매장활동가는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최진희 이사가 문선희 이사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한다. 만약에 정읍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면 방경은님을 운영위원장으로 인정한 것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말한다. 인정하고 싶은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 맘에 안드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방경은님을 인정한 것도 내려놔야 한다고 말한다.
- 곽은경 이사가 10월 이사회 후에 정읍운영위원회 건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회의결과를 따르지 않는 부분은 안타깝다고 말한다.
- 조도운 이사가 정읍운영위원회 건 관련하여 정읍 조합원들에게 이사회에서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 고 말한다.
- 박지현 이사가 조합원들에게 경과보고를 하는 정도가 좋겠다고 말한다. 몇 달 후에 있을 대의원 총회 때 입장 발표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의결사항>

- 정읍지역운영위원회에 대한 10월 이사회 결정사항의 취지는 조합원 활동의 활성화에 있으므로 모임지기 전체(꼬마농부지기 포함)를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기를 권고한다. 활동가

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함으로 인해 운영위원이 되지 못하는 모임지기가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정읍매장책임활동가는 정읍운영위원회에 참관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 광고

■ 폐회

- 박영신 이사장이 4시 2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 의사록 서명 2017_11_21(화)

성명	서명	성명	서명
박영신		문선희	
라영신		임미란	
박지현		김영임	
양은정		조윤정	
최진희		구장희	
곽은경		조도운	